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17호 2024. 3. 19.(화요일)

##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630호 하동군 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 . . . . 1
- 하동군 조례 제2631호 하동군 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 . . . . . 7
- 하동군 조례 제2632호 하동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 . . . . 14

##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273호 하동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 . . . 22

## 훈 령

- 하동군 훈령 제398호 하동군 공무원 등 휴양시설 이용 규정 전부개정훈령 . . . 23
- 하동군 훈령 제399호 하동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폐지훈령 . . . 26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4-44호 2024년 하동군 사방사업 사방지 지정 고시 알림 및 게시협조 요청 27
- 하동군 고시 제2024-46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 . . . . 28
- 하동군 고시 제2024-47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 . . . . . 29
- 하동군 고시 제2024-48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 . . . 30

## 일반공고

- 하동군 공고 제2024-426호 2024년 청년 나눔주택 입주자 모집 . . . . . 31
- 하동군 공고 제2024-438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공고 . . . . . 36
- 하동군 공고 제2024-463호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공고 37
- 하동군 공고 제2024-471호 하동군 청년타운 조성사업 건립공사 외 2개소 건설사업관리 용역 참여기술인 업무 중복도 의견 수렴 공고 . . . . . 40

회 람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19일

하 동 군 수 하 승 결



하동군 조례 제 2630 호

### 하동군 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하동군 군민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하동군 군민상을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 및 시기) ① 하동군 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매년 시상하며, 군민의 날에 수여한다.

② 시상은 표창패로 한다.

제3조(시상부문) ① 군민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에 대하여 시상한다.

- 1. 자랑스러운 군민상: 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교육, 효행, 봉사 등의 분야에서 공적이 현저하거나 귀감이 되는 사람
- 2. 특별상: 대내외적으로 하동군의 명예와 위상을 높인 개인 또는 단체

② 수상인원은 군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단,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후보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 특별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등록기준지가 하동군인 사람

② 군민상은 동일인에게 중복하여 시상할 수 없다.

제5조(공적기간) 공적기간은 수상후보자의 전체기간으로 한다.

제6조(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가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 1통
2. 이 력 서 1통
3. 주민등록표 초본 1통
4. 연서추천서 1통(단, 지역주민이 추천할 경우에 한하며,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5.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군민상 후보자는 거주지 읍면장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한다. 단, 특별상은 소관부서장이 추천한다.

③ 군민상 후보자를 추천한 거주지 읍면장 등은 군민상 심사위원회 심의 시 후보자의 공적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④ 최근 3년 이내에 군민상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

제7조(수상자 결정)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적조서 내용을 조사 확인하고, 시상예정일 10일 전까지 군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자 중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군민상 심사위원회) ① 군민상 수상자의 선정심사를 위하여 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위원회는 군수가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 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담당이 된다.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1. 군 공식행사 초청
2. 본인 사망 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제13조(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하 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 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공적조서의 작성과 포상대장 등재에 관하여는 「하동군 포상 조 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는 폐지한다.

다만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에 따라 한다사대상을 수상한 사람은 제3조에 따른 특별상을 수상한 것으로 본다.



## 연서추천

(            부문)

<b>1. 수상후보자 인적사항</b>				
주 소				
성 명	( 한 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 여
<b>2. 연서 추천자</b>				
연번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서명 · 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				
∴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19일

하 동 군 수 하 승



하동군 조례 제 2631 호

### 하동군 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

####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하동군 소속 공무원의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하동군의 회·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가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맞춤형 복

지제도 적용대상은 하동군의회 의원, 청원경찰, 공중보건의사 및 「하동군 공무원 근로자 인사 및 복무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공무원
4. 제7조에 따른 하동군 공무원 복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7조에 따른 하동군 복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복지제도

제5조(복지제도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단체보장보험, 소속공무원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복지시설 운영 지원
3. 소속공무원 등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지원
4. 직장 등의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5.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6.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임신 축하 물품 지급
7. 직원 화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및 가족의 문화·체육활동 지원
8.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상조회 운영
9.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위로·격려금품 지원
10. 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등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

11.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복지시설의 운영) ① 군수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을 위한 임대숙소, 구내식당, 매점,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등
3.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복지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하동군 공무원 복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하동군지부가 추천하는 공무원
2. 공무원 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3. 지역경제, 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직무 및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맞춤형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무원 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복지시설 및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복지실태확인 등)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 제3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12조(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 등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단체보험은 계약기간 동안 적용한다.

③ 전출·해외파견·정직·휴직·퇴직 등으로 급여 지급 사유가 중단 또는 소멸된 경우 그 사유 날부터 정지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 제13조의 기본항목에 한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1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1.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2.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생명·상해보장보험 외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지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

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4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군수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기본항목을 선택하는데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이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이다.

1.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정근수당 계산방식에 따른다.

2.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다.

제15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 복직, 전입, 퇴직, 직위해제, 파견, 전출 등 신분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⑤ 그 밖에 복지점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6조(회계처리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7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대상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 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

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
-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법 제77조제3항에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복지제도 등 통합 운영) 군수는 하동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19일

하 동 군 수 하 승



하동군 조례 제 2632 호

### 하동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따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2.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치유의 숲 안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내는 비용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치유의 숲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담당 공무원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산림휴양법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복지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위치) 치유의 숲은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산286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운영·관리 등) ① 치유의 숲은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하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휴양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유의 숲의 운영·관리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산림복지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치유의 숲 내에서 산림치유를 지도하게 하거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위탁조건,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치유의 숲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치유의 숲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2. 1월 1일

3. 설날, 추석연휴 기간

4. 그 밖에 군수가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시설의 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의 숲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2. 산불방지, 산림병충해 방제, 시설의 개수·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정서 및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된 경우

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4. 각종 상행위

5. 동물 포획, 식물 채집, 토석 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6. 시설물 이전·손상·파괴 및 화재위험 행위

7. 그 밖의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7조(체험예약) 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체험일이 3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일까지)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체험료 등) ①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체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이용하는 경우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이용하는 경우
3. 군이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5.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6. 18세 이하 두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 제10조(체험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납부한 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군의 사정으로 체험이 취소된 경우: 전액
  3. 체험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체험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체험료의 50퍼센트
  5. 체험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하지 않은 경우: 전액 미반환

② 체험료의 반환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공제 후 반환 금액에서 뺄 수 있다.

제11조(세입조치)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의 수입은 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2조(준용)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 험 료 징 수 기 준 ( 제 8 조 제 2 항 관 련 )

구 분	기 준	체 험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산 치 프 그 림 유 로 램	2시간 기준 (1명)	5,000원	4,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일반 대상자 체험료가 적용된다.</li> <li>- 단체란 10명 이상이 같은 회차에 일괄 신청하는 일행을 말한다.</li> <li>- 하동군민 체험료 감면은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일행이 하동군민이 아닐 경우 그 일행에 대해서는 일반 대상자 체험료가 적용된다.</li> <li>- 특별한 재료가 소요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재료비 등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li> </ul>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19일

하 동 군 수 하 승



하동군 규칙 제1273호

하동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하동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무원 등 휴양시설 이용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3월 19일

하 동 군 수 하 승



하동군 훈령 제 398 호

### 하동군 공무원 등 휴양시설 이용 규정 전부개정훈령

하동군 공무원 등 휴양시설 이용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동군 공무원 등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하동군 휴양시설인 콘도미니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 등의 범위) 이 규정에서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3. 하동군의회 의원
4. 공중보건 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제3조(이용신청대상) ①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 이용신청대상자는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부부공무원(군 소속 공무원 등에 한함)의 경우 1명으로 본다.

제4조(주관부서) 콘도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주관부서는 행정과(맞춤형복지 업무 담당)로 한다.

제5조(이용시설) 이용시설은 군 소유 콘도회원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며 이용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6조(이용기준) ① 콘도 이용은 반드시 신청인이 사용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타인에게 무단대여 할 시는 3년간 콘도 이용권을 제한한다.

② 콘도 이용신청 시 신청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하되, 중복되는 경우는 다음 순위에 따라 배정한다.

1. 부서별 연찬회(계획서 제출)
2. 전년도 미이용자
3. 하위직 직원

③ 콘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휴직 중인 자
2. 타 기관 파견근무 중인 자

제7조(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① 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관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콘도이용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콘도회사에 예약을 신청하고 그 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의 취소 등) ① 콘도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용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콘도 이용 변경·취소에 관한 내용을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사전 통지없이 콘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연도 콘도이용을 제한한다.

제9조(시설이용료 부담) 콘도 이용에 따른 객실, 부대시설 등의 시설 이용료는 콘도 이용자가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폐지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3월 19일

하 동 군 수 하 승



하동군 훈령 제 399 호

하동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폐지훈령

하동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고시 제 2024 - 44호

##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24년 하동군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 합니다.

2024. 3. 8.

### 하 동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참조
2. 지정 사유 : 2024년 사방사업 시행지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4.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
5. 사방지 지정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하동군청 산림과 산림정책담당(☎055-880-246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사방지 지정 조서 및 내역 1부.  
2. 사방지 지정 도면 1부. 끝.

# 하천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24 - 46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3. 7.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4-00007
2. 허가연월일 : 2024. 3. 7.
3. 점·사용의 목적 : 수상구조요원 대기소 운영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897, 20㎡  
(인근:범왕리 산114-7)
5. 점·사용의 기간 : 2024. 6. 1. ~ 2024. 8. 31.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수(화개면사무소)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24-47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 3. 14.

하 동 군 수

- 허가(승인)번호 : 2024-00002
- 허가연월일 : 2024. 3. 14.
- 점·사용의 목적 : 식물재배(농업)
-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887-3, 887-8 / 403㎡
- 점·사용의 기간 : 2024. 03. 14. ~ 2029. 03. 13.
-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배순례

하동군 고시 제2024 - 48호

#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3. 14.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양로 29-10 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0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공항중앙길 12-12 외 41건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폐지사유	비고
별 지 참 조(4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4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 3. 1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서식 7

임차인 공모 공고

하동군에서는 하동 관내 공실(空室)로 방치되어 있는 주택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청년(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들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하는 ‘하동 청년 나눔주택 사업’ 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정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입주희망자를 모집합니다.

2024. 3. 6.

## 하 동 군 수

1. 신청기간 : 2024. 3. 6. ~ 3. 14.(9일간)
2. 신청자격 :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년 : 하동군(이하 “군” 이라 함)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24년도 기준, 출생년도 1979년 ~ 2005년 해당)

순 위	입 주 자 격	증 병 서 류
1순위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 가족관계증명서(등본) · 소득금액증명, 최근 3개월 급여 명세서 중 택일 ※ 부부는 본인 및 배우자 합산 ※ 직전년도 소득 기준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재산세) ※ 직전 1개년 전국기준 재산세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기준)
2순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3순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3. 지원제외 대상 : 임대인의 직계가족
4. 신청방법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방법 : 입주신청서(붙임) 및 증빙서류 구비 후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공고기간 내 접수분에 한함)
  - 선정방법 : 입주자격 순위(1·2·3순위)에 따라 임차인 선정
    - 임대주택 수량에 따라 1순위 > 2순위 > 3순위 순으로 임차인 확정

○ 결과발표 : 2024. 3. 18.(월) 13시 이후, 당첨자에게만 개별통보(유선)

5. 입주가능(예정)일 : 2024. 5. 00. 이후부터(※임대자와 협의 후 결정)

6. 임대주택현황

임대주택 번호	위 치	모집 세대	임 대 현 황				임대료(만원)		비고
			구 조	해당층	방 수	면적(m <sup>2</sup> )	보증금	월세	
하동군 관리카드 2019-1	하동군 황천면 남산리 170-2	1	목조	1	1	31.5	300	20	계약 즉시 입주 가능
NO. 2024-1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 509	1	목조	1	1	27	200	15	
NO. 2024-2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15-2	1	블록/ 슬레이 트	1	1	39	100	15	입구 측 하얀 벽 집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15-2	1	목조/ 슬레이 트	1	2	15	100	12.5	입구 기준 가장 안쪽 집

7. 유의사항

- 위 임대주택은 주택소유자가 군과의 협약을 통해 의무임대기간(2~4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기로 약정한 반값 임대주택임  
※ 의무임대기간 시작일은 최초 임차인 입주일로부터 산정함.
- 임차인 신청자 중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 소득이 낮은 자 > 연령(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이 높은 자 순으로 결정
- 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결과는 군과 주택소유자 간의 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임시 수단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기타 관계 법률에 의한 권리관계에 있어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주택소유자가 따로 선정할 수 있음.
- 임대차 계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간 책임을 져야 함.
- 임대주택 당첨 후 입주포기 시 추후 입주신청 불가.

8. 문의사항 : 하동군 건축과 건축행정부서(055-880-2148)

9. 입주신청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발 행 처
공통	신청서 및 정보 제공동의서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읍·면사무소, 정부24
	소득금액증명, 최근 3개월 급여 명세서 중 택일 ※ 부부는 본인 및 배우자 합산 ※ 최근 1개년 소득 기준 ※ 6.30일 이전인 경우 신청일의 직직전 귀속연도까 지만 신청 가능 ※ <b>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 제출</b>	세무서, 홈택스 (인터넷발급가능)
	주민등록등본(세대주 기준)	읍·면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재산세) ※ <b>직전 1개년 전국 기준 재산세</b>	군청 재정관리과 읍·면사무소 <b>(방문발급만 발급가능)</b>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에 의한 주택 소유여부 판정

-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과세연도 직전 1개년 전국 자치단체 기준 재산세 기준
- (방문 발급) 군청 재정관리과 방문(기혼자 1인 방문 시 배우자의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필요)

\* 관할지자체 단체(전체, 전체 선택) / 과세연도(직전 1개년 선택) / 세목선택(재산세 선택) / 사용목적(청년 나눔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제출용 기재) / 주민·법인번호 뒷자리 포함

서식 8

입주 신청서

### 입주 신청서

입주신청건물 : 해당 임대주택 주소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 성 별 :

○ 생년월일 :

○ 주 소 :

○ 세대원수

연번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본인			
1			
2			
3			
4			
5			

○ 연 락 처 :

※ 구비서류 : 공모 공고 참고

위 신청인은 하동군에서 공급하는 하동 청년 나눔주택에  
입주코자 신청합니다.

2024년 3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 하



하동군 공고 제2024-438호

###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 하동군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하동군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24. 3. 8.
  - 제공받는 자 : (주)경남정보시스템
  - 제공목적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위한 OCR 고지서 인쇄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종, 부과대상 차량번호, 부과대상 건물소재지, 납부금액,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번호, 고지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환경개선부담금 OCR고지서 출력작업 완료시까지
  - 공고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알림
  - 공고기간 : 2024. 3. 13. ~ 2024. 3. 27. (15일간)
  -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24. 3. 13.

# 하 동 군 수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공고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 랐

- 기 간 : 2024년 3월 19일 ~ 4월 8일
- 장 소 : 군청 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및 마을회관, 군 홈페이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sup>2</sup>당 가격

### • 의견제출

- 기 간 : 2024년 3월 19일 ~ 4월 8일
- 제출사항 :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청 민원과, 읍·면 민원실, 군 홈페이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제출방법 : 군,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FAX로 제출, 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온라인 제출

###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합니다.

2024년 3월 19일

하 동 군 수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 21.>

##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small>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small>
의 견 제 출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 견 제 출 내 용	열람지가 <span style="float: right;">원/m<sup>2</sup></span> 의견가격 <span style="float: right;">원/m<sup>2</sup></span>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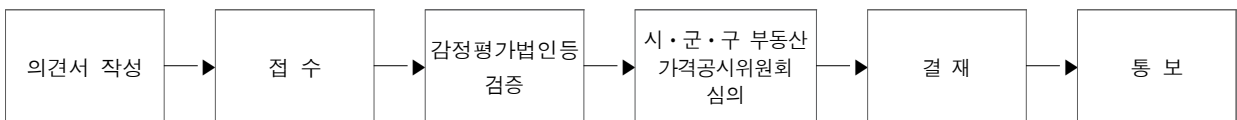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 하 동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 처리절차



의견제출인

시장·군수·구청장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7]

## Opinions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opinion hearing period expires	
Person submitting opinion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Subject Individual Lot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Actual Use				
Grounds for submitting opinions	Perused Price		Submitting Persons's Opinion		
	KRW/m <sup>2</sup>		KRW/m <sup>2</sup>		
Reasons to submit opinions					

Pursuant to Paragraph (5) in Article 10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Paragraph (1) in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same Act, I submit an opinion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as above.

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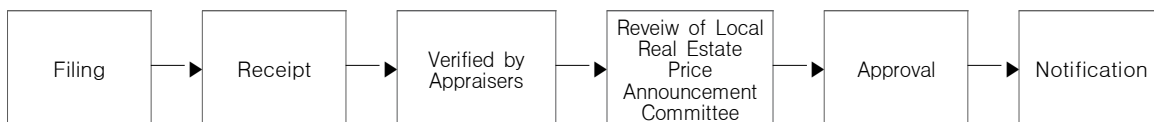
Person submitting opinion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opinion(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	--	------------

### Proceedings



Person submitting opinion

The head of City, Gun, Gu

하동군 공고 제 2024-471호

## 하동군 청년타운 조성사업 건립공사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의견 수렴 공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821호, 2023.12.28.)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 청년타운 조성사업 건립공사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누락 및 허위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18일

하 동 군 수

1. 의견수렴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간 (2024.03.18.~2024.03.25.)  
※ 상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 붙임파일 참조
3. 의견제출방법(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가. 우편 : (5233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 도시과 도시건축담당  
나. 이메일 : sh0873@korea.kr
4.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보는 하지 않으며,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누락 및 허위사실 등을 확인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에 반영할 계획임.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하동군 도시과 도시건축담당(055-880-69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붙임 : 1. 업무중복도 의견수렴공고  
2. 업무중복도 공개자료(업체별)  
3. 업무중복도 의견서

#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평가자료에 대한 의견서

□ 용역명 : 하동군 청년타운 조성사업 건립공사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상자					의견 (평가자료의 오류, 누락 등)
소속	성명	용역명	용역기간	발주처	
의견 제출자		소속			
		성명	(서명)		
		주소			
		연락처			

2024. . .

## 하동군수 귀하